

이사회운영 규정

시행일 2014.01.01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알테오젠(이하 “회사” 라고 한다)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 (이사회 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 규정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
-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
제4조 (이사회 구성)

- 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이사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5조 (의장)

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며,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감사의 출석 등)

-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③ 감사규정 제16조에 의해 감사는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의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의 종료 후 도래하는 정기이사회에 출석,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감사규정 제21조에 의해 감사는 감사규정 제21조의 각 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 (관계인의 의견 청취)

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 (이사회회의 구분 및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3개월마다 개최하며, 필요에 따라 소집권자가 개최시기 및 장소를 정할 수 있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.
- ④ 이사회회의 소집권자는 의장으로 하며,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에서 정한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.
- ⑤ 감사규정 제21조의 각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일시, 장소, 부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0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.
- ②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또는 동시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④ 사외이사는 제11조제1호 라목, 바목, 사목 및 하목, 제4호 나목의 사항이 부의되는

이사회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.

- ⑤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
- ⑥ 이사회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.

제11조 (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상법 및 정관상 결의사항

- 가. 주주총회의 소집(상법 제362조, 정관 제23조)
- 나.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(상법 제447조)
- 다. 대표이사 등의 선임(상법 제389조, 정관 제37조)
- 라. 신주의 발행사항 결정(상법 제416조, 정관 제9조의2와 제10조)
- 마. 준비금의 자본전입(상법 제461조)
- 바. 전환사채의 발행(상법 제513조, 정관 제18조)
- 사.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(상법 제516조의2, 정관 제19조)
- 아. 사채의 발행(상법 제469조)
- 자. 지점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(상법 제393조, 정관 제3조)
- 차. 자본의 감소(상법 제438조)
- 카.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(상법 제341조, 정관 제14조)
- 타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(상법 제340조의3, 정관 제11조)
- 파. 우리스주매수선택권 부여(정관 제12조)
- 하. 영업의 양도, 양수, 임대 등(상법 제374조)
- 거. 정관의 변경(상법 제434조)
- 너. 회사의 합병 및 분할(상법 제522조와 제530조의3)
- 더. 주식의 분할(상법 제329조의2)
- 러.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정(정관 제15조)

2. 회사경영에 관한 사항

- 가.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
- 나. 신규사업의 추진
- 다. 중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

3. 자산에 관한 사항

- 가. 중요한 계약의 체결

- 나. 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
- 다. 결손의 처분
- 라. 장기 자금의 차입
- 4. 기타
 - 가. 주요한 소송의 제기과 화해에 관한 사항
 - 나. 이해관계자거래에대한통제규정에 규정된 사항
 - 다. 기타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 (이사회 장소)

이사회는 회사의 본사에서 개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본사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.

제13조 (사후추인)

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 결의를 경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장이 담당이사와 협의하여 임시 처리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에는 사후 신속 하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 (위 임)

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위임 전결케 할 수 있다.

제15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,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
- ③ 의사록의 원본은 본점에 비치한다.

제16조 (여비교통비)

이사회에 참석한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액수의 여비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 (규정의 제·개정 및 세부사항)

-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- ② 이 규정의 구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.

제18조 (개정이력)

개정번호 (Revision No.)	시행일자 (Effective Date)	개정사유 (Reason of Revision)	개정자 (Revised By)
1.0	2014년 1월 1일	제정	박종윤